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	파산자 김혜진의 파산관재인 강정은 소유물건 (2026타경100045)
의 뢰 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권영희
감정서번호 :	GD09-260126-30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부산지사

TEL. 051-995-2444 FAX. 0505-182-4448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김 덕 우 (인)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부산지사 지사장 장주연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이억이백만원정(₩202,000,000.-)**			
의 뢰 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권영희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제 출 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5계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파산자 김혜진의 파산관재인 강정은 (2026타경100045)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등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01.29	2026.01.29	2026.01.30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202,000,000
	합 계					**₩202,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장 주 연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소재 "괴정역(부산지하철 1호선)"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경매(2026타경100045)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2.1.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6년 1월 29일로 결정하였습니다.

2.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1월 29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3.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2.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 조건 검토

4.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4.2. 감정평가 조건 검토

별도로 부가된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5. 감정평가 기준 및 감정평가 방법

5.1. 감정평가의 근거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2.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3.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 구분건물의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의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 등에 의거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 . 향별 . 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을 비교·검토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권을 일체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 외 다른 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물건의 특성, 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하는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6. 감정평가절차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 대상물건의 확정 ■ 기준시점의 확정 ■ 가격종류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 사전조사계획의 수립 ■ 실지조사계획의 수립 ■ 가격조사계획의 수립
3. 대상물건의 확인	■ 물적사항 확인 ■ 권리상태의 확인 ■ 물적불일치 여부의 판단
4. 자료수집 및 정리	■ 확인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요인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사례자료의 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 일반적 요인의 분석 ■ 지역적 요인의 분석 ■ 개별적 요인의 분석
6.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평가조건에 부합되는 적정한 평가방법의 선정 및 시산가액 조정
⇩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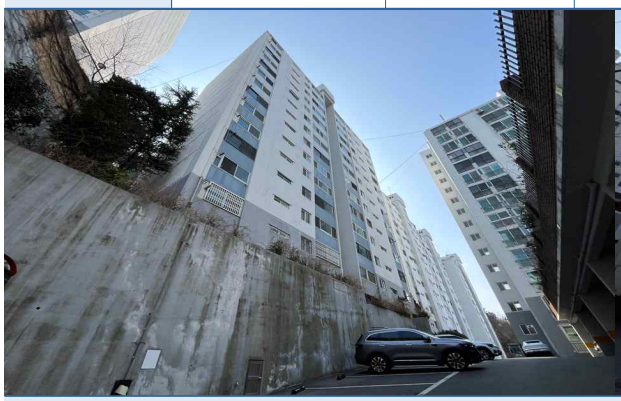
나.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상태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와 상이할 수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바, 토지와 건물의 구분 평가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나, 귀 요청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후첨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에 기재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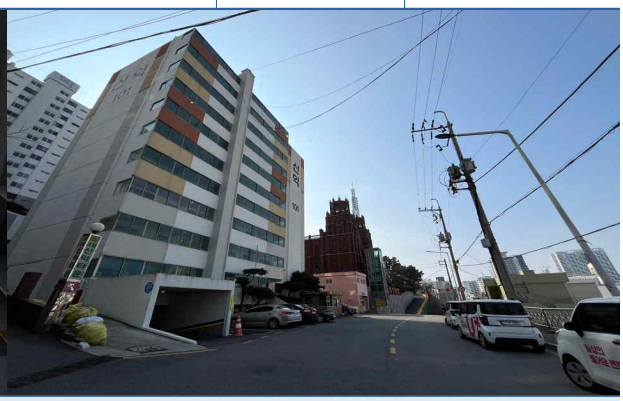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 개요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398-22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46				
건 물 명	신익타운 2동		사용승인일	1991.04.2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주용도	공동주택,대피소	
전체층수	지하 1층, 지상 13층		호수/가구수/세대수	26세대	
일련번호	층·호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대지권면적(㎡)
1	제2층 제201호	140.59	34.344	174.934	56.78



대상건물



주위환경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1.1. 거래사례의 선택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가치형성요인비교

1.1.1.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	전용면적(㎡)	거래금액(원)	거래단가(원/㎡)	거래시점	비고
a	**괴정동 398-22**	**신익타운**	**3/4/4○○**	**83.96**	**135,000,000**	**1,607,909**	**2025.06.30**	**-**
b	괴정동 398-23	신괴정화신	102/14/14○○	111.28	213,500,000	1,918,584	2025.12.08	-
c	괴정동 398-23	신괴정화신	101/11/11○○	154.44	204,000,000	1,320,901	2025.12.15	-

※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1.2. 감정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	전용면적(㎡)	평가금액(원)	평가단가(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ㄱ	괴정동 398-23	신괴정화신	101/11/11○○	154.44	257,000,000	1,664,077	2024.04.19	법원경매
ㄴ	괴정동 352-34	벽산하이츠	1/8/8○○	84.66	160,000,000	1,889,913	2025.11.17	법원경매

※ 출처 : KAPA HUB PLUS 등

1.1.3. 거래사례의 선택

상기 거래사례 중 본건 인근에 소재하며 본건과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으며 가장 최근에 거래된 사례인 **<거래사례 a>**를 선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2. 사정보정

상기 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간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보정은 불필요합니다.

사정보정률	1.000

1.3. 시점수정

1) 지　　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2) 가격지수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3) 기준시점 : 2026.01.29 (거래시점: 2025.06.30)

4) 시점수정치

지역·용도	가격변동률	계 산 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파트	-2.008% (0.97992)	아파트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25.06.30~26.01.29) 거래시점 : 2025.06.30, 2025년05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6.01.29, 2025년12월 지수를 적용 함 2025.06.30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5월) : 99.6 2026.01.29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12월) : 97.6 시점수정치 : 97.6/99.6≒0.97992

1.4. 가치형성요인 비교

1.4.1. 개요

집합건축물의 가격은 일반부동산과 달리 단일 혹은 수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일단의 토지상에 소재하는 일동의 건물에 다수의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가치형성요인은 전체부동산에 대한 가치형성요인과 대상 구분소유건물 자체의 가치형성요인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형성요인의 구분으로서 전체부동산에 대한 가치형성요인은 ①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외부적 요인(토지요인)과 ②구분소유권이 속하는 건물 전체에 대한 건물요인으로 구성되며 ③구분소유건물 자체의 가치형성요인으로서는 구분소유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개별적 요인 등으로 구별되는바 이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격차율을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가치형성요인	조건 및 항목	비 고
(단지) 외부요인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의성, 교통 및 도보의 편의성, 교육환경, 자연환경, 거주환경 등	-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건물의 규모, 단지의 구성 및 환경, 건물의 구조 및 설비, 건물의 노후도, 주차시설 및 공용시설등의 상태, 보안 및 유지관리 등	-
호별 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 향별 효용, 전유면적 및 대지사용권, 내부 설계 및 구조 등	-
기타요인	개발사업 가능성, 행정적 규제,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

1.4.2. 가치형성요인 비교

요 인	조 건		비교치	비 고
(단지) 외부 요인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의성	인근 편익시설의 거리 및 편의성	1.00	상호 유사합니다.
		공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 및 도보의 편의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차량 이용의 편의성 (가로의 폭, 구조, 계통, 접면)		
		획지 · 단지의 여건 (경사지, 고저)		
	교육환경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등)과의 거리, 등하교의 편리성		
		인근 교육시설의 종류, 학군 선호도		
	자연환경	자연환경(조망, 경관, 풍치 등), 공원 및 녹지 등과의 접근성		
	거주환경	거주환경 조성상태		
		거주환경 저해시설(오염시설, 공해 및 소음유발시설, 위험 및 혐오시설 등)의 유무 및 거리		
(단지) 내부 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상호 유사합니다.
	건물의 규모	총 세대수, 건물의 최고 층수		
	단지의 구성 및 환경	동의 배치상태, 동간 거리, 면적별 구성비, 공간적 쾌적성 (용적률, 건폐율 등)		
		조경 및 녹지 등 조성상태		
	건물의 구조 및 설비	건물의 구조 및 재질		
		현관구조(계단식, 복도식), 외부구조(판상형, 타워형, 혼합형 등), 내진설계, 필로티 유무		
		난방방식(지역난방, 개별난방 등), 각종 설비(승강기 등)의 유무 및 상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요 인	조 건		비교치	비 고
	건물의 노후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 여부		
	주차시설 및 공용시설등의 상태	세대당 주차대수, 지하 주차장의 유무 및 세대 연결성, 차량 진출입의 용이성, 기계식 주차장의 유무 및 비율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경로당, 유치원)의 유무 및 상태		
	보안 및 유지관리	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및 관리 상태		
호별 요인	층별 효용		0.91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층별 효용 및 전유부분의 면적 크기 등에서 열세합니다.
	위치별 효용	일조, 채광, 조망 등의 정도, 통풍의 정도		
		엘리베이터, 계단으로의 접근성		
		소음의 영향 정도		
		사생활 침해의 정도		
		공용시설·교육시설·교통시설 등과의 접근성, 편익시설의 접근성		
	향별 효용			
	전유면적 및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의 면적 크기,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설계 및 구조	평면방식(타입 등), 방 및 화장실의 개수, 복층 유무, 1층 전용 정원 여부, 다락·테라스·베란다 등의 유무		
		반지하의 상태(전면 완전 노출 형 등)		
기타 요인	개발사업 가능성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편입 여부	1.00	상호 유사합니다.
	행정적 규제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누 계			**0.910**	**본건/거래사례**

1.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5.1. 적용단가의 결정

사례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 산정단가						
일련번호	사례번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적용단가 (원/㎡)
1	a	1,607,909	1.00	0.97992	0.910	1,433,816

1.5.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번호	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시산가액 (원)	결정가액 (원)	비고
1	1,433,816	140.59	201,580,191	202,000,000	-
합 계				**202,000,000**	-

Ⅳ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일련번호	소재지	동·층·호	전유면적(㎡)	대지권(㎡)	결정가액(원)	비고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398-22 신익타운	제2동 제2층 제201호	140.59	56.78	202,000,000	-
합 계			140.59	56.78	202,000,000	-

2.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가. 감정평가액의 결정 : 202,000,000원

나. 결정에 관한 의견

본건 평가에 있어서 산정된 시산가격을 평가사례, 인근지역에 형성된 가격수준, 실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적정한 평가액이라고 판단되어 상기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끝.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공 부	면 적 (㎡) 사 정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46 1.동소	398-22 신익타운 제2동 398-22	공동주택및 대피소, 전기실, 노인정, 관리실, 경비실, 공중변소, 주차장 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1층~13층 각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281.18 8,660			
1				(내) 제2층 제201호 1. 소유권대지권	140.59 5,678 8,660x----- 866,000	140.59 56.78	202,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121,200,000** **80,800,000**	
	합 계						**₩202,000,000.-**	
			이	하	여	백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소재 "괴정역(부산지하철 1호선)"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신익타운 제2동 제2층 제201호"로서, 인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괴정역(부산지하철 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13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방4, 화장실2, 내실, 거실, 주방겸식당)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북측 하향 완경사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1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2025-08-13)(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부고 제2025-320호)), 중로3류(폭 12m~15m)(2025-03-13)(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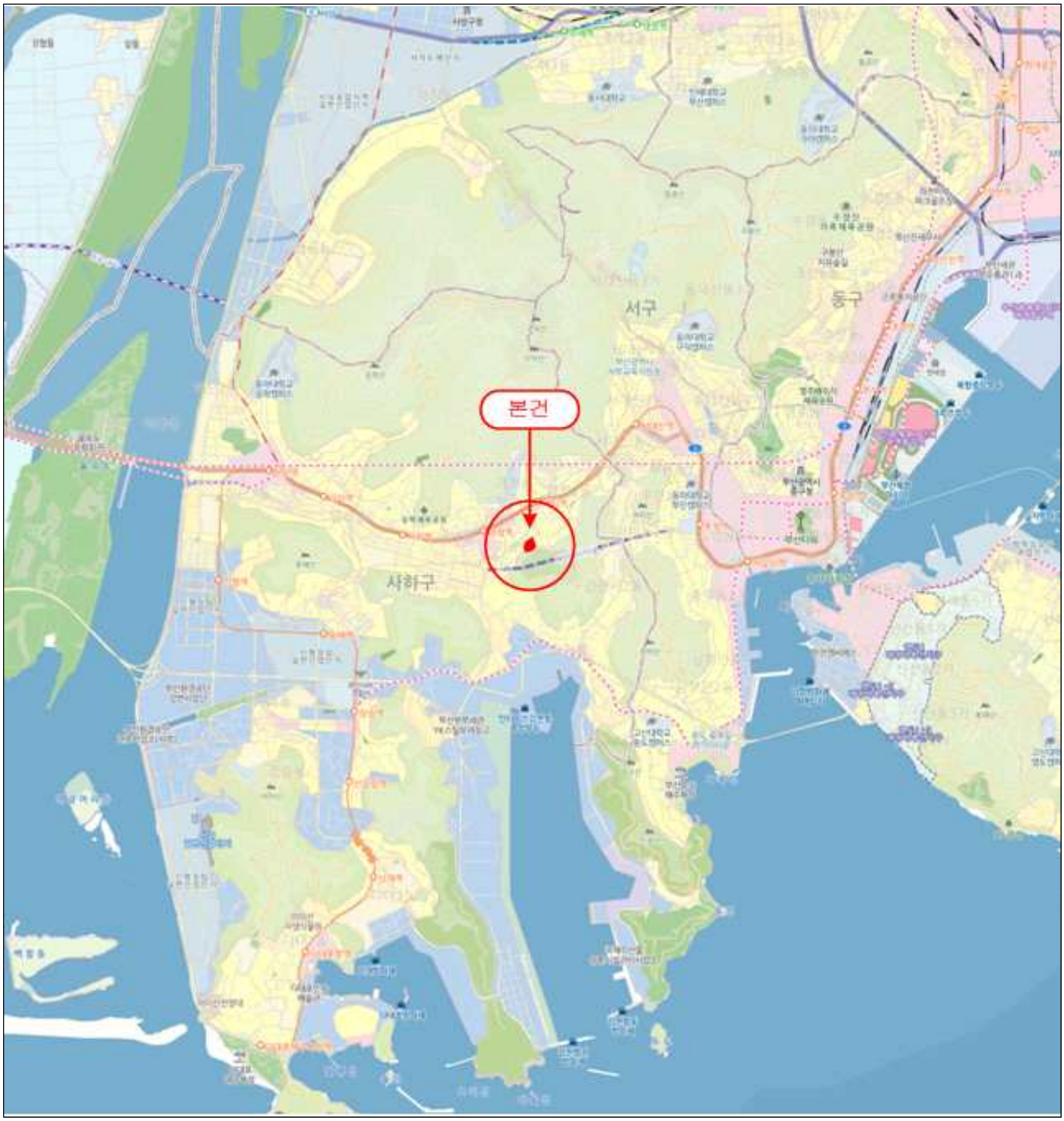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398-22 신익타운 제2동 제2층 제201호



위 치 도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398-22 신익타운 제2동 제2층 제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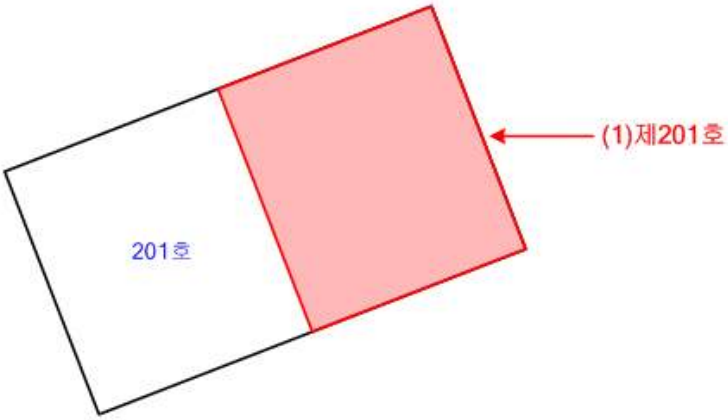


내 부 구 조 도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398-22 신익타운 제2동 제2층 제201호

No Scale

【 호별배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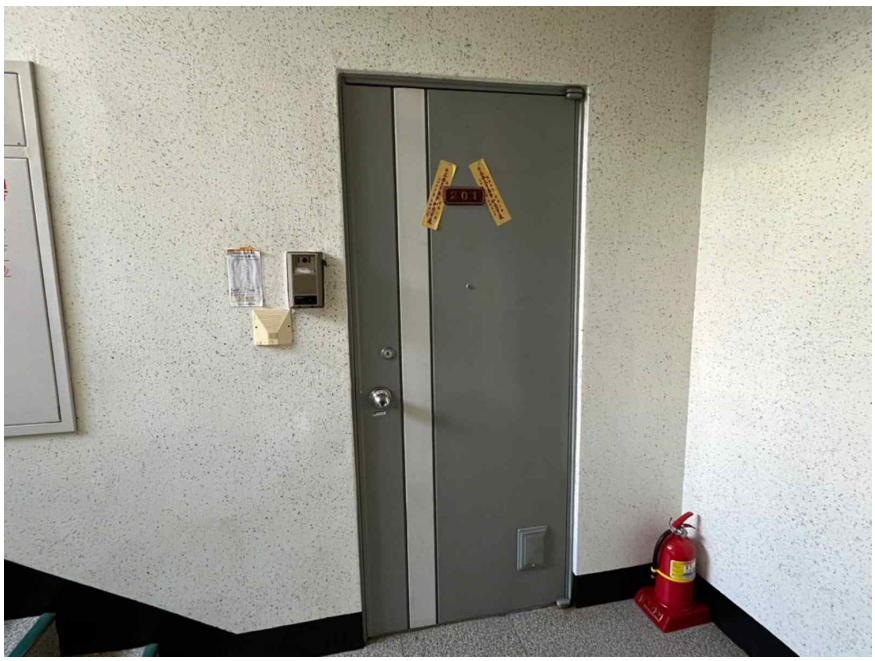
【 신익타운 제2동 제2층 】

【 내부구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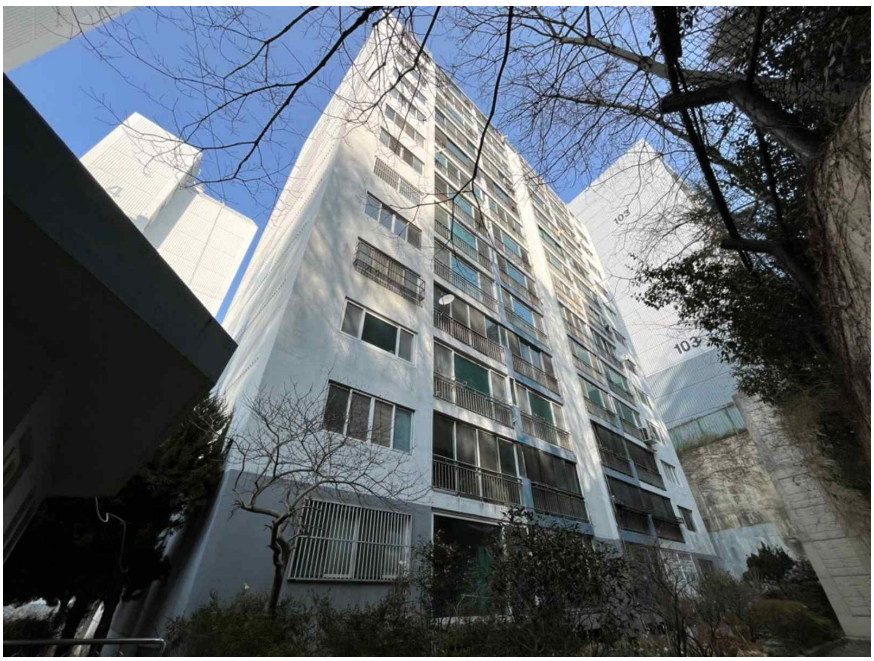


【 (1) 제2층 제201호 】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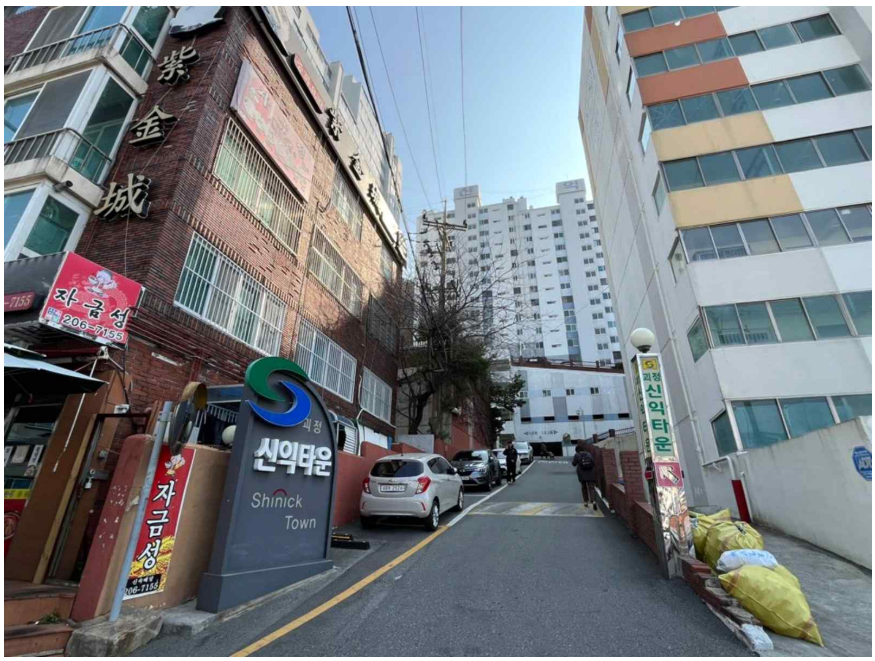


본건 외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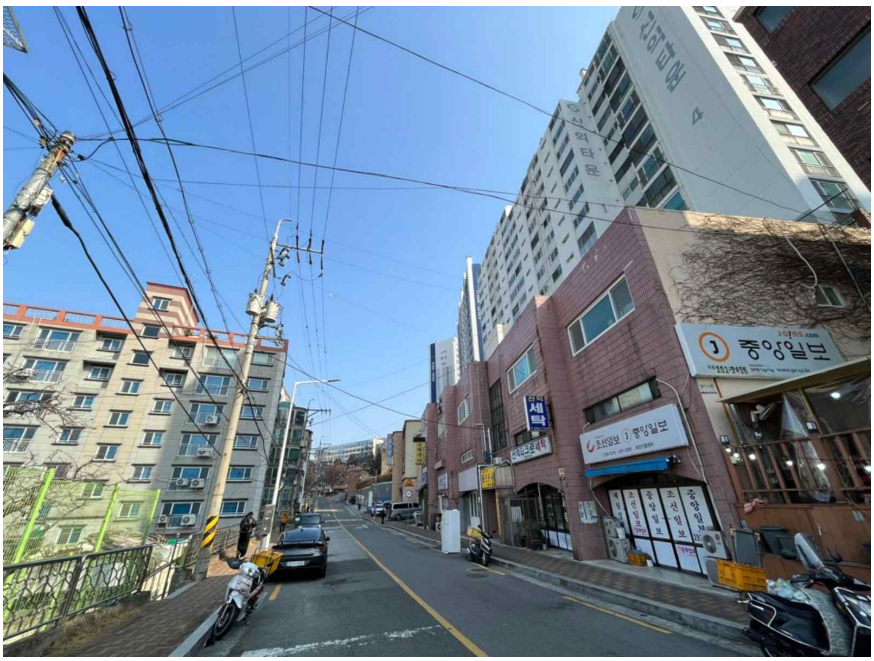


본건이 속한 건물전경

사 진 용 지



본건이 속한 건물전경



주위환경